

표 5에 따르면 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신제품 인증심사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고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서는 수수료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여 신제품에 대해서도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되 신청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초 신청시에는 면제하되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고자 동일 신청제품에 대해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 송부하거나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dongseb@korea.kr

○ 전화 : 043 - 870 - 5509

○ 팩스 : 043 - 870 - 5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전화 043-870-5509, 팩스 043-870-5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공고제2020-853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환경부공고 제2020-826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업무가 유역·지방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세부 사항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일관적인 행정 업무를 도모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제3조)

- 통합허가사업장의 출입·검사관련 업무범위와 적용대상사업장 및 점검 권한 등 구분

나. 관할 구역(제4조)

- 환경청별 점검·검사할 수 있는 관할 구역 구분 및 오염도 측정(수질, 대기) 등 분석기관 구분

다. 업무 절차(제5조-제10조, 제13조-제18조)

- 통합허가사업장의 이행관리 업무(가동개시 및 시운전, 정기·수시검사, 개선명령, 자체개선계획서 수리,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절차 명료화

라. 통합허가 사업장의 기록 관리(제11조-제12조)

- 사업장이 제출하는 자료의 제출시기 및 내용확인, 통합허가사업장의 점검·검사내용의 보고시기 등 정리

마. 통합허가 사업장의 표시(제19조)

- 통합허가 사업장을 표시하는 명패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26.(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통합허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17, 6722), FAX(044-201-6728) 또는 전자우편(h.y.song8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1부. 끝.

● 환경부공고제2020-86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명확히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의 연접된 면적에 대한 산정기준과 신설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의 적용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